

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(제22조제2항 관련)

공사 종류	총예정공사비	책임감리원	보조감리원
발 전 · 송 전 · 변 전 · 배 전 · 전기철도	총공사비 100억원 이상	특급감리원	초급감리원 이상
	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	고급감리원 이상	초급감리원 이상
	총공사비 50억원 미만	중급감리원 이상	초급감리원 이상
수 전 · 구내배전 · 가로등 · 전력사용 설비 및 그 밖의 설비	총공사비 20억원 이상	특급감리원	초급감리원 이상
	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	고급감리원 이상	초급감리원 이상
	총공사비 10억원 미만	중급감리원 이상	초급감리원 이상

※비고: 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성질상 공사감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위 표의 자격 기준보다 강화하여 배치하고,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.